

부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59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5. 선고 2019가단1030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초의 청구원인은 부당이득 반환이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의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5행의 “2019. 9. 24.”을 “2019. 9. 27.”로 고치고, 제3면 10, 15행의 각 “환금”을 “환급”으로 고치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종전에 거래한 적도 없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상품권 판매를 제안 받았는데, 피고의 지식과 경험, 직업이나 영업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거액이 송금되었으므로 삼각사기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 연락처 및 매수인과 송금인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위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그의 원고에 대한 금원 편취행위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방조로 평가할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와 아무런 상호연락을 한 바 없어 보이고,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C의 의뢰를 받고 C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상품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위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C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더욱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② 상품권은 대표적인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그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상품권 매매를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매금액을 이례적인 고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수령하면 그 송금인의 신원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로서는 위 상품권 판매대금을 현찰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하면서 오히려 더욱 안전한 거래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④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우와 같은 삼각사기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평균 이상의 이해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국가에 환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위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피고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위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조장현, 판사 엄지아